

#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의 위원회 관련 규정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627
----------	-----

2023년 4월 25일  
교육위원회

##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년 3월 29일, 김혜영 의원
2. 회부일자 : 2023년 4월 3일
3. 상정일자 : 제31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2023년 4월 25일 상정, 수정가결)

## II.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김혜영 의원)

### 1. 제안이유

- 서울시교육청 소관 위원회 운영 및 심의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내에 외부전문가의 위원 비중을 확대하는 등 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조문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교육청 소관 위원회 기능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각 위원회별로 개정 내용에 대해 규정함(안 제2조~제15조)

### Ⅲ.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조례안은 2023년 3월 29일 김혜영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 627호로 발의되어 2023년 4월 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중 위원회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문을 일괄 정비하고자 발의된 것입니다.

#### 2. 주요 검토의견

##### 가. 일괄정비 취지에 대한 검토

- 현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98개의 각종 위원회가 운영중에 있고 이중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는 서울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 91개 위원회(법령 56개, 조례 35개)가 있습니다.

이러한 위원회는 각 개별 조례에서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서는 그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공무원 위원과 민간 위원으로 그 위원 구성을 구분하여 명기하고 있습니다.

- 위원회 위원중 공무원 위원은 일반적으로 전문성이 아닌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 직위 등에 따라 기계적으로 임명되고 있으며 해당 위원은 자신이 속한 행정기관의 입장을 대변하는 반면, 민간 위원의 경우에는 소관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정책결정과정에 다양한 의견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 한편 위원회를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 진행 및 안건내용 정리 및 의견을 조율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바, 위원회 운영 및 의결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동 조례안은 민간 위원의 위원회 참여 비율을 명확히 규정하고 위원장을 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각 조례의 위원회 관련 조문을 일괄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함께 정책결정과정에서 전문적 의견 반영 및 민주적 의사결정의 확대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나. 개정 조문에 대한 법적 검토

- 동 조례안은 안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서울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를 비롯한 14개의 서울시교육청 소관 조례를 대상으로, 위원의 3분의 1이상은 외부전문가로 위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하는 내용으로 정비하고 있는바,

대상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상위법령을 통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조례로 이를 일괄 정비하는 것은 별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1] 동 조례안 관련 위원회 성격 및 구성 현황<sup>1)</sup>

위원회명	성격	설치근거	위원 정수	위촉직 위원수	위원장	부위원장
서울교육재정계획	자문	법령	11	6	부교육감	기조실장

1) 위원회는 크게 합의제 행정기관인 위원회와 합의제 행정기관이 아닌 위원회로 구분되고, 합의제 행정기관이 아닌 위원회는 다시 의결기관으로서의 위원회와 자문기관으로서의 위원회로 구분됨. 여기서 의결기관으로서의 위원회는 그 의결사항이 행정기관의 행정행위를 구속하는 반면, 자문기관으로서의 위원회는 그 의결사항이 행정기관의 행정행위를 구속되지 않음. 「법령입안 길잡이」 법제처 법제지원총괄과, 219p.

심의위원회		(지방재정법 제33조)				
학교협동조합 민관협의회	자문	조례	10	9	외부위원	외부위원
공론화의제선정위원회	자문	조례	10	7	외부위원	외부위원
장학생심사위원회	의결	조례	6	5	교육정책국장	참여협력담당관
생활임금위원회	의결	조례	7	5	기획조정실장	외부위원
서울특별시혁신학교 운영위원회	자문	조례	15	13	외부위원	참여협력담당관
원격수업지원위원회	자문	조례	13	10	교육정책국장	외부위원
서울특별시평생학습관 운영위원회	의결	조례	10	6	평생진로교육국장	
학교밖청소년지원위원회	의결	조례	9	6	부교육감	
생명존중위원회	의결	조례	9	7	평생진로교육국장	민주시민생활 교육과장
학교체육진흥 지역위원회	의결	법령 (학교체육진흥법 제16)	8	6	외부위원	체육건강문화 예술과장
교육기부위원회	자문	조례	11	8	외부위원	외부위원
적정규모학교 육성추진위원회	의결	조례	15	9	부교육감	
서울특별시교육청에너지 이용합리화추진위원회	의결	조례	11	9	부교육감	교육행정국장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안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울 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경우 교육청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위한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책임감과 대표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위원장은 부교육감,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현 체제를 계속해서 유지해 줄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 -5353., 2023.4.7.).

○ 그러나 동 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sup>2)</sup>에 설치 근거를 둔 법정위원회이나 자문기구에 불과하고 타 시·도교육청의 경우

2)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①~⑧(생략)

⑨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

⑩ 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해당 시·도교육청의 상황에 따라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시·도교육청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공정성과 책임성 투명성 민주성 측면을 고려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2] 지방교육재정심의위원회 타시도 구성 현황

구분	위원장	부위원장
부산광역시	민간위원 중 호선	위원 중 호선
대구광역시	민간위원 중 호선	위원 중 호선
대전광역시	민간위원 중 호선	위원 중 호선
세종특별자치시	민간위원 중 호선	교육정책국장
울산광역시	민간위원 중 호선	위원 중 호선
인천광역시	부교육감	정책기획조정관
광주광역시	민간위원 중 호선	행정국장
경기도	제1부교육감	기획조정실장
강원도	부교육감	행정국장
충청남도	부교육감	기획국장
충청북도	부교육감	기획국장
경상남도	민간위원 중 호선	민간위원 중 호선
경상북도	부교육감	정책국장
전라남도	부교육감	행정국장
전라북도	민간위원 중 호선	위원장 지명
제주도	위원 중 호선	위원 중 호선

- 특히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한정된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교육재정 전반에 관한 재정 운용의 기본 틀을 제시하는 것인 만큼, 재정운영의 책임성 못지 않게 중기지방계획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다 폭넓은 외부의 의견을 수렴하는 장치 또한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한편 안 제4조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속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공론화의제선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개정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현재 동 조례 폐지조례안이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

에 회부되어 있으므로 동 조문의 개정 여부는 동 폐지조례안과 연동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V. 토론요지 : 없음

VI. 수정안의 요지 :

- 「서울특별시교육청 속의민주주의 실현 조례 폐지조례안」의 의결에 따라 해당 조례는 폐지되었으므로 안 제4조를 삭제함.

VII.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VI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IX.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의 위원회 관련 규정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627
----------	-----------

제안연월일 : 2023년 4월 25일  
제안자 : 교육위원장

## 1. 수정이유

- 「서울특별시교육청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 폐지조례안」의 의결에 따라 해당 조례는 폐지되었는바, “「서울특별시교육청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의 개정”을 규정하고 있는 안 제4조를 삭제함.

## 2. 주요내용

- 안 제4조를 삭제함.

## 3. 참고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의 위원회 관련 규정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의 위원회 관련 규정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를 삭제하고, 안 제5조부터 안 제15조를 안 제4조부터 안 제14조로  
한다.



##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의 위원회 관련 규정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에서 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조문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위원회 운영과 심의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위원회 기능에 대한 시민의 신뢰성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울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의 개정)** 서울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국장”을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제4조(서울특별시교육청 장학생 선발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장학생 선발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전단 중 “각각 교육정책국장과 교육지원국장이 되며”를 “각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외부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도록”을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로 한다.

**제5조(서울특별시교육청 생활임금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활임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를 “위원장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제6조(서울특별시 혁신학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혁신학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제3항 각 호의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를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7조(서울특별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위원회”를 “이 조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로 한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8조(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제10조제3항 중 “위원장은 평생진로교육국장이 되고” 를 “위원장과” 로, “위원들이 선출한다” 를 “호선한다” 로 한다.

**제9조(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위원으로 한다” 를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및 담당 부서의 장” 을 “등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제10조(서울특별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위원회” 를 “이 조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로 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1조(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 이라 한다)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를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2조(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위원 3분의 1 이상은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제13조(서울특별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위원회” 를 “이 조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로 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3분의 1 이상은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4조(서울특별시교육청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를 “위원장과”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담당 국장급” 을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국장급 이상” 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 을 “구성할 때 위원 3분의 1 이상은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 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임에 관한 개정 규정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가 각각 만료된 이후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원회 또는 협의회 의원 구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등) ①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당시 개정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연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개정 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외부전문가를 위촉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는 개정 규정에 따른 위원회(협의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